

의안번호	제859호
의결 연월일	2025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황영호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5년 3월 4일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영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59
----------	-----

발의연월일 : 2025년 3월 4일
발 의 자 : 황영호, 이태훈, 노금식,
김호경, 박용규, 변종오,
임영은

1. 제안이유

충청북도 관광·경제 활성화와 충청권 상생 협력 및 교류 증진을 위해 국가보훈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충청북도 아너소사이어티 및 충청권 지역민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현행 휴양림 지역상품권 페이백 사업의 환급비율을 조정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사용 용어를 개정 및 추가 정의함.(안 제3조)

- “국가보훈대상자”,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충청권 시·도민”

나. 휴양림의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자 추가 규정(안 제12조 및 별표2)

다. 이용객에 대한 지역상품권 환급 기준을 조정함(안 제21조)

- 지역상품권 페이백사업 축소 : (현행) 50% → (조정) 30%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첨부

다. 협 의 :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산림환경과
라. 조례안 예고 : 예고대상(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19.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란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1억원 이상을 기부하였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기부자를 말한다.

20. “충청권 시·도민”이란 도민과 충청남도 또는 대전광역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경우

7. 충청권 시·도민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경우

제21조 본문 중 “50%” 를 “30%” 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설물 사용에 대한 예약을 완료하였거나 시설물을 사용 중인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를 말한다.	10.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11. ~ 18. (생략)	11. ~ 18. (현행과 같음)
<신설>	19.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란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1억원 이상을

<u><신 설></u> 제12조(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감 면할 수 있다. 1. ~ 5의2. (생 략) <u><신 설></u> <u><신 설></u> 6. (생 략) ②·③ (생 략) 제21조(이용객에 대한 지역상품권 환급) 도지사는 주중에 숙박시 설을 예약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결제금액의 <u>50%</u>를 지 역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관광 사업의 활 성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 우 환급 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u>기부하였거나 5년 이내 납부 를 약정한 기부자를 말한다.</u> 20. <u>“충청권 시·도민”이란 도 민과 충청남도 또는 대전광역 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주 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u> 제12조(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① ----- ----- -----. 1. ~ 5의2. (현행과 같음) 6. <u>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자연 휴양림을 이용하는 경우</u> 7. <u>충청권 시·도민이 자연휴양 림을 이용하는 경우</u> 8. (현행 제6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이용객에 대한 지역상품권 환급) ----- ----- ----- <u>30%</u>----- -----. ----- ----- -----.
---	--

[별표 2]

시설사용료의 감면율

구분	감면대상	기준	감면요율	비 고
숲속의집, 복합휴양관, 무궁화관	장애인	중증	요금의 50% 할인	비수기 주 중에 한 함
		경증	요금의 30% 할인	
	국가보훈대상자	1~3급	요금의 50% 할인	
		4~7급	요금의 30% 할인	
		유족 또는 가족 및 그 외 등급	요금의 30% 할인	
	다자녀가정	요금의 30% 할인		
	임산부	요금의 50% 할인		
	병역명문가 가족	요금의 30% 할인		
	도민	요금의 20% 할인		
	고향사랑 기부자	요금의 20% 할인		
	충청권 시·도민	요금의 20% 할인		
	도민대상 및 명예도민	요금의 50% 할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요금의 50% 할인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제6조(기부자 예우)

- ③ 도지사는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소지하고, 도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관람료, 주차요금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

○ 사 유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국가보훈 희생 · 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과 충청북도 고액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 충청권 상생 협력 및 교류 증진을 위해 충청권 지역민을 대상으로 이용료 할인 혜택을 부여하며, 현행 휴양림페이백 사업의 지역상품권 환급비율을 조정(50%→30%)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 조례 개정시 예상되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